

영상보안 안심플랜 가입신청서

이 용 자		주민등록번호	-	
상 호 명		소재지주소		
업종(담보대상)		연 락 처	T:	H.P:
보 험 기 간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보험 가입 내용

구분	구분		□ D 형	□ E 형	비 고
	□ 영업소 · ① □ 일반 ② □ 특수	침입강도손해	사망 · 후유	50,000,000	50,000,000
현금, 유가증권		1,000,000	1,000,000		
동산, 귀금속		5,000,000	10,000,000	자기 부담금 : 30만원(수탁물제외)	
침입 보관시설파손		2,500,000	5,000,000	침입 도난 행위에 의한 파손 담보	
[추가선택]		□ G 형	□ H 형	비 고	
화재복구지원금		10,000,000	10,000,000	건물 · 시설 [보상기준표(뒷면)참조]	

구분	구분		□ A 형	□ B 형	비 고
	□ 주택	침입강도손해	사망 · 후유	50,000,000	50,000,000
도난담보		현금, 유가증권	1,000,000	1,000,000	
		동산, 귀금속	5,000,000	10,000,000	자기 부담금 : 10만원
		보관시설파손	2,500,000	5,000,000	침입 도난 행위에 의한 파손 담보
화재 담보		10,000,000	10,000,000	실손보상(목조주택 제외)	

[귀중품 목록 / 금액]	[강도 손해 담보 종업원] 성명: (서명) 주민번호 :
점당 300만원 이상의 귀중품은 고지하여야만 됩니다.	

특기사항

- 건설현장, 야적장, 수탁물, 비철(동, 구리, 알루미늄)취급소, 천막구조물, 자동차 · 오토바이, 동 · 식물은 가입불가(담보제외) 합니다.
- 보험가입기간중 가입내용 [사업자, 종업원, 주소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서면 고지를 근거로 보상합니다.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담보 할 수 없습니다.
- 이 신청서는 보험가입을 확인하는 증서의 효력은 없으며, 서비스 중지의 경우 효력이 상실 됩니다.

보험가입과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보안시스템 이용자 본인이 피보험자가 되어 상법731조에 따라 보안서비스 제공자가 제공받는 자의 강도사망 또는 도난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하며, 보안시스템 이용 중단 시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상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한화손해보험(주)에 제공하여 보험계약 체결, 관리 등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비스 이용자(피보험자) : (서명)

서비스 제공회사(계약자) : (날인)

영상보안 안심플랜 가입신청서

이 용 자		주민등록번호	-	
상 호 명		소재지주소		
업종(담보대상)		연 락 처	T:	H.P:
보 험 기 간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보험 가입 내용

구분	구분		□ D 형	□ E 형	비 고
	□ 영업소 · ① □ 일반 ② □ 특수	침입강도손해	사망 · 후유	50,000,000	50,000,000
현금, 유가증권		1,000,000	1,000,000		
동산, 귀금속		5,000,000	10,000,000	자기 부담금 : 30만원(수탁물제외)	
침입 보관시설파손		2,500,000	5,000,000	침입 도난 행위에 의한 파손 담보	
[추가선택]		□ G 형	□ H 형	비 고	
화재복구지원금		10,000,000	10,000,000	건물 · 시설 [보상기준표(뒷면)참조]	

구분	구분		□ A 형	□ B 형	비 고
	□ 주택	침입강도손해	사망 · 후유	50,000,000	50,000,000
도난담보		현금, 유가증권	1,000,000	1,000,000	
		동산, 귀금속	5,000,000	10,000,000	자기 부담금 : 10만원
		보관시설파손	2,500,000	5,000,000	침입 도난 행위에 의한 파손 담보
화재 담보		10,000,000	10,000,000	실손보상(목조주택 제외)	

[귀중품 목록 / 금액]	[강도 손해 담보 종업원] 성명: (서명) 주민번호 :
점당 300만원 이상의 귀중품은 고지하여야만 됩니다.	

특기사항

- 건설현장, 야적장, 수탁물, 비철(동, 구리, 알루미늄)취급소, 천막구조물, 자동차 · 오토바이, 동 · 식물은 가입불가(담보제외) 합니다.
- 보험가입기간중 가입내용 [사업자, 종업원, 주소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서면 고지를 근거로 보상합니다.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담보 할 수 없습니다.
- 이 신청서는 보험가입을 확인하는 증서의 효력은 없으며, 서비스 중지의 경우 효력이 상실 됩니다.

보험가입과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보안시스템 이용자 본인이 피보험자가 되어 상법731조에 따라 보안서비스 제공자가 제공받는 자의 강도사망 또는 도난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하며, 보안시스템 이용 중단 시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상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한화손해보험(주)에 제공하여 보험계약 체결, 관리 등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비스 이용자(피보험자) : (서명)

서비스 제공회사(계약자) : (날인)

영상보안 안심플랜 요약약관

■ 침입강도손해

[보상하는 손해]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도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상해에는 강도의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 ③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337조~제339조
- ④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4.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5.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7.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8. 제7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화재손해 -[영업소] 화재복구지원금

보험에 가입한 물건(건물·시설)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아래의 손해에 대해 산출된 실손해액을 【실손해액 대비 화재복구 지원금】에 따라 화재복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화재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복구 지원금 보상 기준]

실 손 해 액	화재복구 지원금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 만원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00 만원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600 만원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800 만원
2,000만원 이상	1,000 만원

■ 도난손해 [동산담보]

[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가재 일체와 집기비품을 포함한 모든 동산
2. 귀금속, 보옥, 보석 및 고지된 귀중품

3.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보험의 목적을 훔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시설(건물, 금고 및 도난방지시설 포함)을 파손하는 경우 도난손해조항에서 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도난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
3.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4.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5. 절도,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줌도둑으로 인한 손해
7. 재고 조사시 발견된 손해
8.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9. 자동차, 오토바이, 동물, 식물에 발생한 손해 및 수탁물 손해
10.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11.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12.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13.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 용 집기 등을 보험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발품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 도난손해 [현금 및 유가증권담보]

[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현금 및 유가증권(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합니다. 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하에 생긴 도난손해
3.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4.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5. 절도,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내에서 일어난 줌도둑으로 인한 손해
7. 시재조사시 발견된 손해
8. 망실 또는 분실 손해
9.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10.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11.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12.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시큐리티플러스보험 적용 조건 확인

가입불가물건 (보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적장, 천막구조물, 목조건물, 비닐하우스, - 동물·식물(산상포함), 자동차, 오토바이, - 개인소지품(핸드백, 지갑 등), 에어컨실외기, 미시건 상태로 자리비움 및 증도독사고 → 보상불가 - 수탁물(맡겨놓은 물건-세탁소, 골프장의 랙커룸 등) 	<input type="checkbox"/>
강도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 직계동거가족 한정 담보 / 주택내사고 담보 - 영업소 : 가입자 본인 담보 및 서면 고지된 종업원 담보 - 사망의 경우 현행법상,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보험사고로 담보 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귀중품 / 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중품: 정당 300만원 이상은 서면고지 / 동산: 증빙자료를 근거로 한도내 실손보상 	<input type="checkbox"/>
화재 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 한도내 실손 보상, 일반화재보험 적용 (타보험 중복가입 및 보험가액에 따라 비례보상 될 수 있음) - 영업소 : 화재복구지원금 - 건물. 시설 실손해액 기준 적용 / 보상기준-요약약관의 보상기준표 참조. 	<input type="checkbox"/>
현금/유가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건장치가 있는 시설에 보관해야 함. - 영업소: 피해내역을 확인/증빙 할 수 있는 적절한 입.출 장부 등을 비치 관리. 	<input type="checkbox"/>
보관시설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난행위에 의해 파손된 시설 (건물, 금고, 시건장치 등) 담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시스템 미작동 상태로 72시간이상 부재중 및 미시건(창문포함) 사고는 보상안됨. ◆ 경비이용자의 대표자, 업종, 주소, 종업원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서면고지 담보 ◆ 도난사고 발생시 경찰서신고(도난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및 현장사진 필수 	<input type="checkbox"/>

